의안번호	제 209 호
의 결 연 월 일	2015년 월 일 (제 회)

충청북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제 출 자	충 청 북 도 지 사
제출연월일	2015년 8월 24일

법무통계담당관 심사를 마침

충청북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209

제출연월일 : 2015년 8월 24일
제 출 자 : 충 청 북 도 지 사

1. 제안사유

○ 지역사회 아동들이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아동학대 예방, 가정위탁 활성화 등 아동복지사업 추진과 아동복지전담기관(아동보호전문기관, 가정위탁지원센터) 설치 근거 마련

2. 주요내용

○ 책무 (안 제3조)

- 학대아동의 발견·보호·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와 아동학대의 예방 및 아동보호를 위한 사업 시행

○ 아동복지전담기관의 설치 (안 제5조)

-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가정위탁지원센터 설치·운영
- 비영리법인 지정·위탁 가능

○ 전담기관의 위탁기준 및 방법(안 제7조)

-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사업수행능력, 지역 간 균형분포 등을 감안하여 공개모집으로 수탁법인 선정

○ 비용지원 (안 제11조)

- 아동학대 예방과 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 가능

3. 의안전문 : 붙 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5. 관계법령 발췌 : 붙 임

6. 비용추계서 : 붙 임

충청북도조례 제　　호

충청북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충청북도 아동의 학대 예방과 아동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보호자를 말한다.
3. “아동학대”란 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를 말한다.
4. “아동복지전담기관”이란 법 제45조에 따른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이하 “아동보호전문기관”이라 한다) 및 법 제48조에 따른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이하 “가정위탁지원센터”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아동학대 예방 및 아동보호에 관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는 등 그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학대아동의 발견·보호·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와 아동학대의 예방 및 아동보호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아동학대 발견 신고)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경찰관서에 신고할 수 있다.

제5조(아동복지전담기관의 설치) ① 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법 제45조제2항 및 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가정위탁지원센터를 각 1개소 이상 두어야 한다. 다만, 도지사는 시·군별 아동 수 및 지리적 요건 등을 고려하여 둘 이상의 시·군을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아동복지전담기관을 통합하여 설치·운영하는 경우 도지사는 아동복지전담기관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관할 구역의 아동의 수 등을 고려하여 시장·군수에게 공동으로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6조의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전담기관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아동복지전담기관의 업무) ①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2.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한 상담·치료 및 교육
3. 아동학대예방 교육 및 홍보
4. 피해아동 가정의 사례관리
5. 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 설치·운영 및 자체사례회의 운영
6. 그 밖에 도지사가 정하는 아동학대예방과 관련된 업무

② 가정위탁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가정위탁사업의 홍보 및 가정위탁을 하려는 가정의 발굴
2. 가정위탁을 하려는 가정에 대한 조사 및 가정위탁 대상 아동에 대한 상담
3. 가정위탁을 하려는 사람과 위탁가정 부모에 대한 교육
4. 위탁가정의 사례관리
5. 친부모 가정으로의 복귀 지원

6. 가정위탁 아동의 자립계획 및 사례 관리

7. 관할 구역 내 가정위탁 관련 정보 제공

8. 그 밖에 도지사가 정하는 가정위탁과 관련된 업무

제7조(아동복지전담기관의 위탁기준 및 방법) ① 제5조제3항에 따라 아동복지전담기관을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하되,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사업수행능력, 지역 간 균형분포 및 법 제47조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성과평가를 실시한 경우만 해당한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아동복지전담기관의 수탁자를 선정하려면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에 따른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8조(위탁계약체결) ① 도지사는 제5조제3항에 따라 아동복지전담기관을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제9조(지도·감독) ① 도지사는 아동복지전담기관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사무 전반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시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아동복지전담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아동복지전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시설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위탁의 취소)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2. 보조금, 민간위탁금 등을 횡령, 재산을 유용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관계법령, 조례 및 위탁계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

4. 도지사의 정당한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수탁자가 파산, 법인정리 절차 개시 신청 등의 사유로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된 경우

6. 그 밖에 공익상 관리·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보조금, 민간위탁금, 위탁재산, 업무관련 서류 등을 포함한 위탁업무 전반에 대하여 도지사 또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11조(비용지원) 도지사는 아동학대 예방과 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아동복지 관련 기관, 단체 및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비밀 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지정된 아동복지전담기관은 이 조례 시행일부터 3년간 위탁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수탁 협약이 체결된 아동복지전담기관의 경우에는 당해 협약의 위탁기간을 따른다.

관계법령 발췌

□ 아동복지법

제22조(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각종 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연구·교육·홍보 및 아동학대 실태조사
3. 아동학대에 관한 신고체제의 구축·운영
4. 피해아동의 보호와 치료 및 피해아동의 가정에 대한 지원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사항

제45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 ① 국가는 아동학대예방사업을 활성화 하고 지역 간 연계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을 둔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학대받은 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에 대한 신속처리 및 아동학대예방을 담당하는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을 시·도 및 시·군·구에 1개소 이상 두어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아동 수 및 지리적 요건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시·군·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합하여 설치·운영하는 경우 시·도지사는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관할 구역의 아동의 수 등을 고려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학대예방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제1항에 따른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및 제2항에 따른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기준과 운영, 상담원 등 직원의 자격과 배치기준, 제4항에 따른 지정의 요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8조(가정위탁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국가는 가정위탁사업을 활성화하고 지역 간 연계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를 둔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가정위탁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도 및 시·군·구에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를 둔다. 다만, 시·도지사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시·군·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하는 경우 시·도지사는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관할 구역의 아동의 수 등을 고려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가정위탁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및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⑤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설치기준과 운영, 상담원 등 직원의 자격과 배치기준, 제4항에 따른 지정의 요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 ① 수탁기관 선정에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탁사무별로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위촉 시에는 성별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심의가 끝나면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④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은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 소속 공무원과 해당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 는 위촉하며, 공무원인 위원은 전체위원 수의 1/2을 초과할 수 없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사업계획서의 심의 및 현장확인과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⑥ 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충청북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1. 사업개요

○ 아동학대 예방사업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운영

○ 요보호아동 보호를 위한 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

2. 비용 발생 요인

○ 학대아동의 발견・보호・치료 및 예방 사업비

○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비

3. 관련조문

○ 안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5조(아동복지전담기관의 설치), 제11조(비용지원)

4.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학대아동의 발견・보호・치료 및 예방사업 추진

- 학대피해아동 치유캠프 추진('15)
-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교육·홍보사업 추진('15)

○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 추진

- 아동학대 현장조사, 사후관리를 위한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00)
- 요보호아동 가정보호를 위한 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03)

나. 추계 결과 (15년~19년) : 9,088,450천원(국비 3,688,840, 도비5,399,610)

○ 학대피해아동 치유캠프 : 100,000천원(도비 100%)

○ 아동학대예방 교육·홍보 지원 : 125,000천원(도비 100%)

○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 7,377,680천원(범죄피해자보호기금50%, 도비 50%)

○ 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 : 1,485,770천원(도비 100%)

다. 재원조달 방안 : 국비 40%, 도비 60%

※ 매년 국·도비 확보하여 운영 중 (' 15년 예산 기확보)

5. 연도별 비용추계서 : 9,088,450천원(국비 3,688,840, 도비5,399,610)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5년)	2차년도 (2016년)	3차년도 (2017년)	4차년도 (2018년)	5차년도 (2019년)	계
세 입		737,768	737,768	737,768	737,768	737,768	3,688,840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737,768	737,768	737,768	737,768	737,768	3,688,840
세 출		1,817,690	1,817,690	1,817,690	1,817,690	1,817,690	9,088,450
학대피해아동 치유캠프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100,000
아동학대예방 교육·홍보 지원		25,000	25,000	25,000	25,000	25,000	125,000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1,475,536	1,475,536	1,475,536	1,475,536	1,475,536	7,377,680
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		297,154	297,154	297,154	297,154	297,154	1,485,770
재원 조달		1,817,690	1,817,690	1,817,690	1,817,690	1,817,690	9,088,450
의존 재원	소 계	737,768	737,768	737,768	737,768	737,768	3,688,840
	보조금	737,768	737,768	737,768	737,768	737,768	3,688,840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1,079,922	1,079,922	1,079,922	1,079,922	1,079,922	5,399,610
	지방세	1,079,922	1,079,922	1,079,922	1,079,922	1,079,922	5,399,610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특별회계							
구·군비							
기 타 (차입금, 민자, 예비비 등)							

6. 작성자 : 보건복지국 복지정책과장 박재국